금정구 공고 제2021-1365호

공시송달 공고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(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)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, 체납발생일이 60일을 경과한 체납자에게 **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임을 사전통지**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내용 :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
2. 공고대상 : 왕*안 포함 24명(붙임참조)
3. 공고기간 : 2021. 11. 25.~ 2021. 12. 9. (14일간)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5. 문 의 처 :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(☎ 051-519-4503)

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, 기간 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11월 25일

금 정 구 청 장